大田直轄市公有財産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議案番號 49

提案年月日 : 1994年 4月 日
提 出 者 : 大 田 直 轄 市 長

1. 提 案 理 由

行政需要의 增加 및 地方自治 業務의 國際化를 위한 機構 및 職制等의 改編에따른 所屬公務員의 範圍를 調整하고 官舍管理 規定을 合理的으로 改正하려는 것임.

2. 主 要 骨 子

가. 市長이 提供하는 官舍를 使用할 수 있는 所屬公務員의 範圍를 市政業務를 遂行하는 公務員에게도 提供할 수 있도록 함.(案 第50條)

나. 官舍의 區分은 職位別로 規定한것을 職級別로 區分하여 彈力的으로 運營할 수 있도록 하였음. (案 第51條)

대전직할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직할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0조 (관사의 정의) 관사라 함은 시장,부시장,실·국장등 소속 공무원과 이와 상응한 직급으로 시정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사용하게 하기위하여 시 가 제공하는 소유 또는 임차주택을 말한다.

제5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1조 (관사의 구분) 관사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1급관사는 시장이 사용하는 관사
2. 2급관사는 부시장이 사용하는 관사
3. 3급관사는 3급이상의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이 사용하는 관사 (시장, 부시장 관사제외)
4. 4급관사는 1급관사 내지 3급관사 이외의 관사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0조(정의) 이 조례에서 관사라 함은 시장, 부시장(이하 "시장, 부시장" 이라한다)실·국·과장 등 소속공무원의 사용에 공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공용주택과 동 목적을 위하여 전세로 사용하고 있는 공동 전세주택을 말한다.	제50조(관사의정의) 관사라 함은 시장,부시장, 실·국장등 소속 공무원과 이와 상응한 직급으로 시정업무를수행하는 공무원에게 사용하게 하기위하여 시 가제공하는 소유 또는 임차주택을 말한다.
제51조(관사의 구분) 관사는 다음 구분에 의한다. 1. 1급관사 : 시장관사 2. 2급관사 : 부시장관사 3. 3급관사 : 기획관리실장, 농촌진흥원장 및 공영개발 사업단장의 관사 4. 4급관사 : 1~3급 관사이외의 관사	제51조(관사의 구분) 관사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1급관사는 시장이 사용하는 관사 2. 2급관사는 부시장이 사용하는 관사 3. 3급관사는 3급이상의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이 사용하는 관사 (시장,부시장관사제외) 4. 4급관사는 1급관사내지 3급 관사 이외의 관사

□ 관 사 현 황

○ 시 본 청

(단위 : 평,천원)

급 수	소 재 지	규 모		입 주 자	소 유 자	임 차 기 간	임 차 료
		토 지	건 물				
계	5 개 소						109,000
1	서구 갈마동 321-1	1,180	124	시 장	대 전 시	-	-
2	중구 태평동 삼부APT 407동41호	-	47	부 시 장	〃	-	-
4	서구 둔산동 금성백조 샛별APT 103동 606호	-	31	재 무 국 장	임 차	'94. 2. 3 ~96. 2. 2	33,000
4	중구 오류동 175-1 삼성APT 115동 1103호	-	28	지 역 경 제 국 장	〃	'93. 10. 16 ~95. 10. 16	38,000
4	중구 오류동 175-1 삼성APT 16동 811호	-	28	환 경 녹 지 국 장	〃	'93. 9. 14 ~95. 9. 13	38,000

大田直轄市公有財産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審 査 報 告

1994年 5月 19日
內 務 委 員 會

Ⅰ. 審 査 經 過

1. 提出日字 및 提案者 : 1994年 4月 30日 大田直轄市長
2. 回附日字 : 1994年 5月 6日
3. 上程日字 : 第32回 大田直轄市議會 (臨時會)
   第1次 內務委員會 (1994. 5. 19)
   上程, 審議, 原案可決

Ⅱ. 提案說明要旨 (提案說明者 : 財務局長)

1. 提案理由

行政需要의 增加 및 地方自治 業務의 國際化를 위한 機構 및 職制等의 改編에 따른 所屬公務員의 範圍를 調整하고 官舍管理 規定을 合理的으로 改正하려는 것임.

2. 主要骨子

가. 市長이 提供하는 官舍를 使用할 수 있는 所屬公務員의 範圍를 市政業務를 遂行하는 公務員에게도 提供할 수 있도록 함 (案 第50條)

나. 官舍의 區分은 職位別로 規定한것을 職級別로 區分하여 彈力的으로 運營할 수 있도록 하였음. (案 第51條)

Ⅲ. 專門委員 檢討要旨 (專門委員 : 韓連東)

本 案件은 市所屬 公務員에게 提供하고 있는 住居用 官舍를 自治行政의 흐름에 맞게 그 提供範圍와 級數를 改善하여 앞으로 官舍 管理를 보다 合理的으로 運營하려는 內容임.

主要內容은

案 第50條의 官舍 提供對象이 市長, 副市長, 室·局·課長등의 市所屬 公務員으로 되어 있던 것을 市長, 副市長, 室·局長등 所屬公務員과 이에 相應한 職級으로 市政業務를 遂行하는 公務員에게도 官舍를 提供할 수 있도록 그 範圍를 擴大하였으며 다만, 現在까지 提供例가 없었던 5級 課長은 提供對象에서 除外시켰음.

그리고 案 第51條의 級別 官舍 區分도 3級官舍의 경우 그 對象이 企劃管理室長 農村振興院長 및 公營開發事業團長으로 限定하였으나 이를 級數別로 區分하여 3級官舍 對象은 市長, 副市長을 除外한 3級以上 國家 또는 地方公務員으로 하였음.

本 改正案은 地方自治 實情에 맞게 公有財産管理 方式을 改善하려는 內容으로써, 最近 國際化 및 行政의 多邊化에 따른 中央單位公務員의 地方派遣등 多角的으로 변모하는 地方行政에 能動的으로 對處하기 위해서는 本 官舍 規定 改正은 必要하다고 보겠음.

Ⅳ. 討 論 要 旨 : 省 略

Ⅴ. 質疑 및 答辯要旨 : 省 略

Ⅵ. 審 査 結 果 : 原案可決